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73
----------	-------

발의연월일 : 2026. 9. 30.

발 의 자 : 김상훈 · 김선교 · 이현승
 김은혜 · 최보윤 · 김재섭
 주호영 · 이달희 · 안철수
 권영진 · 김장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출자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3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제율은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에 낮은 수준이고, 공제대상도 광업권·조광권 취득 등에 한정되어 자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나 제련(製鍊)·정련(精鍊) 시설 투자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공제율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상향하고, 공제대상에 사업용 자산 및 제련·정련 시설 투자도 추가하며,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

려는 것임(제104조의15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31년 12월 31일”로, “100분의 3”을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제련(製鍊)·정련(精鍊)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5.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대한 투자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15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거나 출자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u>100분의 3</u>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투자 또는 출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내국인 또는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내국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0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	제104조의15(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 ----- ----- ----- ----- -----2031년 <u>12월 31일</u> ----- ----- ----- -----100분 <u>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u> <u>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u> <u>00분의 10으로 한다)</u> ----- ----- -----.

분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거나 출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투자 또는 출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세

1. ~ 3. (현행과 같음)

4.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
하여 취득하는 제련(製鍊)·
정련(精鍊) 시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

5. 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을 위
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산에 대한 투자

②

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1. 투자일 또는 출자일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투자자산 또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단서 신설> 2. (생략) ③ · ④ (생략)	----- ----- ----- --. 1. ----- ----- ----- ----- <u>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u> 2.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	--